
- 2010년도 -
소방안전본부 종합감사 결과

2010. .



감사관실

I

감사목적

- ❖ 화재 등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응급 구조·구급활동을 중심으로 효과적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예산·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 ❖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II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10. 5. 10. ~ 5. 14.(5일간)
- ❖ 감사범위 : '08. 5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 ❖ 감사반 : 감사반장(감사총괄담당)외 7명 (시민감사관 1명 참여)

III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주의	시정	개선 (경고)	계	추징	회수	감액	계	중장계	경장계	훈계 (경고)
22	13	9		2/2,340	-	2/2,340		14	-	-	14

※ 제수당 관련 미지급분 917,970원 지급

- 수범사례 : 5건
- 제도개선 : 2건

2. 총 평

- ❖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시민의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본부를 비롯한 8개 소방서에서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과학적·입체적 예방 활동, 현장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재난종합상황 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바, 금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임.

3. 주요 지적 사항

- ❖ 금번 감사는 소방안전본부를 중심으로 기타 8개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응급 구조·구급활동과 인사, 회계분야 등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인사분야” 사례 》

① 징계대상자의 제수당 지급업무 소홀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00소방서 000외 3인에 대해 총 393,640원을 과다지급 하였고, 00소방서 △△△의 경우에는 정직1월 처분을 받아 관련규정에 의하면 실질 지급액으로 3,160,280원을 지급해야하나 2,242,310원을 지급함으로써 917,970원을 미지급.

《 “예산회계분야” 사례 》

① 청사관리용역 관리업무 소홀

- ❖ 소방안전본부 및 00소방서 청사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시설운전 보전을 위하여 세제, 기름, 걸레와 용역업무 종업원에 대한 소모성물품(장갑, 토시 등)은 용역업체가 구입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모성물품을 00소방서 예산으로 총10회 2,520,980원의 소모품을 부당하게 구입·지급.

② 1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업체선정 부적정

- ❖ 1건당 1천만원이상의 모든 전문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종에 맞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는지 여부를 ‘건설업 등록증’ 또는 해당 ‘면허수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증’은 건설업의 업종을 판별하는 증빙서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이상의 전문공사를 발주하면서 해당 공종에 맞지 않은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있음.

③ 교육대 야외교육장 측면 조경석 공사에 관한 사항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조경석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하여금 2인 수의계약에 임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난방시공업(제1종)” 등록증만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상대로 1인 수의계약 체결.

《 “전산분야” 사례 》

① 소방안전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상담코너 관리 소홀

- ❖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의거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간의 민원처리 답변 중 65건에 대하여는 최고 2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처리를 하지 않거나 지연처리 하는 등 홈페이지 민원상담코너 관리 소홀.

②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 적정

- ❖ 종합방재센터 유지보수 용역사업과 관련, H/W, S/W가 혼합된 시스템은 H/W, S/W의 유지보수요율 지침에 의거, 각각 분리하여

적용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울 시에는 H/W 기준인 8%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스템연계 유지보수 비용을 12%의 요율로 적용해 1,606천원을 초과 지출.

- ❖ 종합방재센터 유지보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프린터의 경우, 실제 보유한 프린터는 27대임에도 시방서에는 44대로 하여 약 340천원의 비용을 초과 지출하였음.

③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 ❖ 개인용 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개인용 장비 등을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유출하거나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엑셀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게 하였고, 또한 PC에 수록된 모든 자료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자료를 공유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 소홀.

《 “예방분야” 사례 》

① 방화관리자 교육 미 이수자 관리소홀 및 행정처분 부 적정

- ❖ 방화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방안전본부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각 소방서에 잘못 전달함으로써 각 소방서에서 업무정지를 경고로 처분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② 위험물 취급소등 점검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 적정

- ❖ 00소방서에서는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위험물 주유취급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상사의 1개업소에 대하여는 위반내용이 행정처분(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을 할 수 있음에도, 미 처분 하였고, ◇◇주유소의 1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미 이행.

【수범사례】

- 1 신기 의용소방대 꼬마소방차 운영 8
- 2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방재 실무팀 연간 운영..... 9
- 3 친절 및 청렴도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After-Call제
(민원처리 사후평가) 운영..... 10
- 4 시민안전교육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11
- 5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철거건물 활용을 통한 현장
적응능력 향상훈련..... 12

【제도개선】

- 1 위험물 옥외저장소 법정 보유공지 적용 완화..... 13
-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전 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15

수범사례 1 신기 의용소방대 꼬마소방차 운영

- 협소한 골목길로 인한 화재진화의 어려움 해소
- 자발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

□ 목 적

- 신기시장내 화재 발생시 꼬마소방차를 초기진화에 활용
- 의용소방대의 역할확대 및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 확보

□ 현황 및 추진성과

- 운영대수 및 승차인원 : 1대 2명
- 차량제원 : 물탱크 용량 500리터, 호스길이 80m
- 추진성과 : 꼬마소방차 시연 및 신기시장내 화재진압훈련



소방방재청장 방문 시연(2010. 2월)



신기시장내 화재진압훈련

□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꼬마소방차를 활용한 초기 화재진압 출동태세 확립
-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초기화재진압 능력배양

□ 기대효과

- 협소한 재래시장 소방통로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소방안전확보
- 의용소방대 자체 꼬마소방차 운용으로 시장상인 및 이용객들에 대한 119소방홍보의 극대화

수범사례 2 과학방재 실무팀 연간 운영

- 비즈니스 국제도시의 대형 Project 안전을 담당할 과학방재 실무팀 운영을 통하여,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 Project에 대한 Risk 최소화 및 과학방재 토대 마련

□ 추진방침

- 초고층건축물 및 성능위주 특수업무 전문소방관 저변확대
- 과학방재 System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현황 및 추진성과

- 초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권고사항 제정운영
- 화재위험평가 관련 시범운영 및 교육 등
 - 성능위주소방설계 전문교육 등 4회
- 건축심의회시 도출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반영
 - 영종지구A43(39층) 등 23개소

□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151층 인천타워 T/F팀 구성·운영
 - 기 간 : 인천타워 건축심의 1개월 전 ~ 필요시까지
- 최근 소방기술 및 성능위주소방설계 관련 전문교육 참석
 - On-line을 통한 전담 실무팀 기술능력 향상
 - ⇒ 운영포털사이트 : Daum(<http://cafe.daum.net/incheonPBD>)

□ 기대효과

- 취약요인을 분석을 통한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기준 마련
-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도시 구축 및 인천 도시브랜드 제고

수범사례 3 After-Call제(민원처리 사후평가) 운영

- 상시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담당자 청렴성 고취
- 대민설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강구로 환류체계 형성

□ 추진 방침

- 민원 불편·부당 처리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 금품·향응제공 등 비위사실 발견시 엄중문책 및 연대책임 확행

□ 추진 개요

- 운영기간 : '10. 4. 1 ~ 6. 30
- 운영대상 : '09. 7. 1 ~ '10. 6. 30까지 각 소방서 처리한 민원
- 운영방법 : After-Call 전담반 구성(전화를 통한 1:1 설문)
- 단계별 추진
 - 1단계 : '09. 7. 1 ~ 12. 31 처리민원 (설문 완료)
 - 2단계 : '10. 1. 1 ~ 3. 31 처리민원 (운영 중)
 - 3단계 : '10. 4. 1 ~ 6. 30 처리민원

□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1단계 설문결과 도출된 하위그룹 소방서 집중관리
- 2단계 설문부터는 직접 현지조사 등 비위감찰 실시(표본점검)

□ 기대효과

- 문제점 도출 시정 및 제도개선으로 소방민원행정 신뢰도 향상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시민 스스로 공직자 반부패 척결의지 체감

수범사례 4 시민안전교육 봉사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119소방안전체험장을 활용한 대 시민 구급교육의 효과 증진 및 Up-grade된 구급교육으로 국제적 수준의 응급처치능력 향상 도모

□ 추진방침

- 119소방안전체험장 응급처치체험실을 활용한 응급처치 교육
- 생활 속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체계적인 교육내용의 보급

□ 세부추진내용

- 운영시기 : 연중
 - 대 상 : 영·유아보육시설 교사 등 일반시민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등 3과목 4시간 교육(교육인원-5명 내외)
 - 방 법
 - 119소방안전체험장 응급처치체험실 활용
 -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오후시간(13:00~17:00)
 - 교육 이수자 안전봉사자 인증카드 발급
- ※ 4월말 현재 교육이수자 : 영·유아 보육교사 130명 이수

□ 기대효과

-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시민 응급처치능력 강화
- 응급처치 안전봉사자 인증카드 발급으로 시민의 자긍심 고취

수범사례 5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철거건물 활용을 통한 - 현장 적응능력 향상훈련

- 철거 예정건물에서 실제 화재를 가상한 진압 및 구조훈련 실시로 소방인적자원의 전문화
- 고층건물 화재, 지하실 화재 등 다양한 실전훈련으로 화재진압 능력 극대화

□ 시책(사업)목적(방침)

-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상한 실전훈련으로 소방인적자원의 전문화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훈련참여로 화재진압능력 극대화

□ 현황 및 추진성과

- 추진기간 : 2009년 11월 ~ 철거 종료 시
- 추진대상 : 연희119안전센터 등 7개 119안전센터(구조대)
- 추진성과 (2010. 3. 31 기준)
 - 동원인원 : 소방공무원 301명, 의용소방대원 250명
 - 동원장비 : 펌프차, 물탱크차 등 98대

□ 향후 전망 및 조치계획

- 도시 재생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 완료 까지 지속 추진
- 주택 및 상가, 고층아파트, 지하실 화재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진압·인명구조 훈련 추진

□ 기대효과

- 실질적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통한 현장 소방전술 능력 배양
-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철거 예정 건물 활용가치 상승

제도개선1 위험물 옥외저장소 법정 보유공지 적용 완화

위험물 허가사항인 옥외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옥외저장소 주위에 보유공지의 너비를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장의 부지가 점점 협소화되는 관계로 보유공지의 확보 기준을 다소 완화함

□ 현황 및 실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1의 I 제1호 라목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5m 이상

- 옥외저장소 허가현황(2009.12월말 기준)

계(인천)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남부	강화
260	48	0	50	92	45	13	11	1

□ 문제점

- 대부분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허가업체는 공장으로서 공장 부지내 공터의 면적이 협소하여 기존 허가된 옥외저장소의 위험물 허가수량을 증설할 경우에 저장소 4면에 적용되는 보유공지의 기준에 의거 증설허가가 불가하며,
- 공장 부지내 보유공지의 미사용으로 인하여 부지내 보유공지의 활용이 전혀 되지 못하여 공장의 경쟁력 및 업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 불법으로 보유공지 내 위험물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발생함.

□ 개선의견

- 위험물 옥외저장소 너비의 보유공지 규정을 3면으로 제한(단, 화재 발생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불연재료 이상의 담 또는 벽으로 된 1면을 제외한)하여 옥외저장소의 허가수량을 증설하는데 도움이 되고, 기존 보유공지의 공터에 대한 공간 활용도를 높임.

□ 관련법규 및 소관 부처·청

- 관련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11
- 관련부서 : 소방방재청 방호과 위험물안전팀

제도개선 2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전 시공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 제출 전 공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현행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별칙규정이 없어”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의 절차를 관계인등은 소홀히 취급하는 실정임.
 - 『사전신고(협의)가 없는 시공은 후에 법령등 화재안전에 위배되어 재시공으로 인한 공기연장 및 영업주에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주는 등 민·관간의 의견대립(불일치)으로 소모적인 소방 행정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개선의견

- 건축허가동의 후 착공신고 없이 착공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처럼 안전시설설치신고도 강제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두어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관련법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